



# 식품의약품안전청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의약품 제조(수입)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

1. 국내 제조(수입)업소 등으로부터 입수한 “구연산실데나필 단일제(경구)”등 2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(자발적 부작용 보고사례) 평가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 및 “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(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-40호, ‘08.6.30)”에 의거 2개 회사 6개 품목의 허가사항(사용상의 주의사항)을 통일조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용기(앰플주사제) 및 첨가제가 함유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, 이지드럭(<http://ezdrug.kfda.go.kr>)의 첨가제방에서 해당 성분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통일 조정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의 내용에 추가할 것.

2.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을 일정기한까지 변경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변경 허가한 것으로 같음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하여, 귀 업소 해당 제조(수입)품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 지시하니 1개월 이내에 다음 방법에 의거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품목허가(신고)증 원본 이면(변경 및 처분사항 등)에 다음과 같이 기재할 것.

| 변경 및 처분사항 등   |  |   |
|---|--|---|
| 연 월 일   | 내 용  |   |
| 2009.5.16.<br>↑<br>변경지시일로부터<br>1개월 후 일자.<br>예) 변경지시일 : '09.4.16<br>→1개월 후 일자 : '09.5.16 | 효능, 효과, 용법·용량,<br>사용상의주의사항<br>↑<br>변경지시항목 기재 | (의약품관리과-3907호, 2009. 4.16)<br>↑<br>변경(행정)지시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|

나. 품목허가(신고)증 원본에 변경 지시한 내용(통일조정안, 용법·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)을 첨부한 후 자체 보관·관리할 것

다. 기타 첨부문서에 관한 관리는 “의약품등 안전성 정보의 효율적 전파를 위한 지침(우리 청 의관65612-2469호(‘03.11.27))”에 따를 것

3. 동 기간 내에 상기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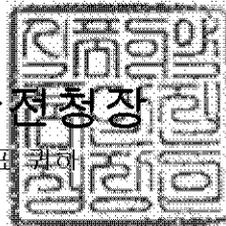
정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: 1.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 
2. 해당업소 및 품목현황

(※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의 하단 'KFDA분야별서비스-의약품정보방'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음). 끝.

### 식품의약품안전청장

수신자 한국화이자제약(주) 대표 귀하, 한국릴리(유) 대표 귀하



담당

**최희정**

사무관

**김상봉**

의약품관리과장

전결 04/16

**김광호**

협조자

시행 의약품관리과-3907 (2009. 04. 16.) 접수

우 135-193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38-29 유림빌딩 3층

/ <http://www.kfda.go.kr>

전화 02-3156-8062 전송 02-3156-8071 / [fin1227@kfda.go.kr](mailto:fin1227@kfda.go.kr)

/ 대국민공개

친절·청렴 행정, 식약청의 자존심입니다. 부조리신고센터([www.kfda.go.kr](http://www.kfda.go.kr))